

제2945호
2022. 8.17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
편집인 : 홍 보 전 산 과 장 도 순 심
전화 : 3396-4951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고 시

선	기관 의 장
람	

구 보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73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- 고 시
 - 제2022-73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2
 - 제2022-74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
 - 제2022-75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0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,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21-72호(2021.06.02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1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1. 사 업 명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위치및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40-4번지 일대 3,653.9㎡
3. 사업시행자
 - 명 칭 : 세운5구역PFV주식회사 대표 박세진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(여의도동, 세우빌딩)
 -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, 14층(여의도동, 세우빌딩)
4.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1년 06월 02일
6. 변경사유 및 내용
 - 변경내용 : 사업시행자 변경(주연합외이앤제이→세운5구역PFV주) 및 자치규약 변경
 - 변경사유 : 원활한 사업시행
7. 관 계 도 서 : 우리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5)에 비치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74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1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 (지번주소)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 (효력발생일)	도로명주소 부여사유
		도로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-1 10 외4필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1길 34	2022. 8. 17.	신청에 따라 퇴계로7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.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-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등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75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17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1길 34	2022.8.17.	건물 철거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1길 34-2	2022.8.17.	건물 철거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가길 11-10	2022.8.17.	건물 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